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2. 18.(수) 09:31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1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0차 및 제6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6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63-313)**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쪽입니다. 의결주문,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19년 10월 30일 우방산업(주)이 신청한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방산업(주)은 (주)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상파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방송사 경영능력 등을 중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 방송·미디어 분야 2명, 경제·경영·회계 분야 1명, 법률 분야 1명, 시청자·소비자 분야 1명 등 7명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 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신청자의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승인 여부 및

승인조건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월 말에 위원회 의결과 사업자 통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에 대한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일정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은 종전 3조원이었으나 2008년 말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조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3월 (주)울산방송의 최대액출자자를 (주)삼라로 바꾸는 변경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들은 향후 SM그룹의 자산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사업자 의견청취에서 SM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자산을 감축해서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변경승인 조건에 따라 올해 4월 19일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안건이 방송법 제8조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기본계획 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신청인은 (주)삼라와 기원토건, 우방산업(주)이 합병할 경우에 자산총액 감소분이 1,170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M그룹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합병 건과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주)삼한기업과 우방산업(주)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에는 올해 결산 기준 SM그룹의 자산총액이 9조 8,3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소유 겸영 규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 1,170억원 이상의 자산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본 건의 합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면 수긍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방송사의 최대액출자자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SM그룹이 (주)울산방송의 최대액출자자로서 얻고자 하는 또는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SM그룹은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무려 148개에 이르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삼라가 소속된 SM그룹 계열사가 울산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방송의 영향력이 최대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 3월 변경승인 심사 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삼라가 이제 다시 우방산업(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심사에서도 이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방산업(주)의 순자산가치가 1,162억원, (주)삼라의 순자산

가치는 2,500억원 수준입니다. 발행주식 기준으로 보면 1주당 가치를 환산할 때 (주)삼라는 주당 51만원, 우방산업(주) 주식은 주당 1만 7,000원으로 순자산가치가 (주)삼라가 훨씬 큼니다. 발행주식 수까지 감안하면 약 7배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 창출력을 볼 때도 (주)삼라가 우방산업(주)보다 우량합니다. 작년까지 3년 평균 EBITDA, 즉 상각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주)삼라가 177억원으로 우방산업(주)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현금을 창출해 낸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우방산업(주)의 재무능력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방산업(주)은 현재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입니다. 2016년 자본금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영업정지 사유가 자본금 미달인 점을 감안할 때 심사과정에서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이나 재정적 능력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주)울산방송이 지난 '15년부터 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방송사의 최대액출자자로서 (주)울산방송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청법인은 주로 경기도에 영업기반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주)울산방송에 대한 지역성 구현 가능성, 또 현재 적자상태인 (주)울산방송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지원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고 중점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옥 위원님께서 다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중복을 피해 걱정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보태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SM그룹이 처음에 (주)울산방송을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기반이 울산이 아닌 SM그룹이 해운법을 또 확장하면서 울산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부분에 대한 영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방송사를 소유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최대액출자자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M그룹에서 경영과 소유, 또 방송내용과 그런 영리와는 분리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우방산업(주)으로 최대액출자자가 바뀌는 만큼 이번에도 역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 옥 위원님 지적대로 우방산업(주)이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영업정지 중이라 함은 그만큼 일종의 부실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주)울산방송의 경영정상화에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 사회적 신용도나 재정 운영 상태 이런 부분이 심사 때 꼼꼼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사들이 요즘 대부분 방송사를 소유하는 행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설사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방송내용에 관여하거나 간섭해서 영업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연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서, 또 최대액출자자로서 과연 사회적인 공적책임, 공익성,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심사 때 우방산업(주)의 자세나 각오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심사단을 잘 꾸려서 심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주)삼라가 당초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로 변경될 때 향후 방송법에 따른 소유지분 제한을 위배할 가능성이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삼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방통위에 변경 승인을 신청했는데, 짧은 기간 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민방의 최다액출자자가 이렇게 짧은 기간 바뀌면 방송의 경영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 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는 지역민방입니다. 따라서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에 우리가 이번 심사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른 쪽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저희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어떻게 영업정지 당한 기업이 방송의 대주주로 오는지 그 영업정지의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여 과연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한 지역발전, 더구나 경기도에 주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울산은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먼데, 과연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최다액출자자로 참여하려고 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반적으로 원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 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건 (2019-63-314)**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역시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의무편성비율 관련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허가 조건 변경(안)입니다. 기존은 허가신청서 최종본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2020년 25% 이상 편성할 것입니다. 변경되는 허가조건은 허가신청서 최종본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준수하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할 것,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2020년 20% 이상 편성할 것입니다. <나> 당초 2020년~2021년으로 계획했던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의 일정을 따른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사의 요청, 2019년 8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전까지 제공될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쪽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2017년 수도권과 광역시권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된 바 있습니다. 4쪽 <나>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 필요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UHD 편성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일부 위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직수율 저조,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지상파 UHD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UHD 의무편성비율 완화, 시·군 지역 UHD 도입 연기 등을 요청했습니다. <방송사 의견>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HD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시·군 지역 일정 연기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지상파 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침체, 방송사 경영악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시청자 이익, 글로벌 동향, 방송사 재정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UHD 정책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적용될 경과조치(안)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지역 방송국의 경우에 2019년 12월 재허가 의결 시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계획을 감안한 의무편성비율을 허가조건으로 기 부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방송국입니다. 2017년 9월 신규허가 조건으로 기 부가한 '20년도 의무편성비율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편성비율을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방송사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수도권 UHD 프로그램의 수증계를 통해 의무편성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6쪽 시·군 지역 방송국입니다. 당초 2020년~2021년 도입하기로 계획했던 시·군 지역 UHD 도입은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의 지상파 UHD 방송 전국 도입 일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가전사, 연구기관 등 지상파 UHD 방송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UHD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를 방송사와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내년 2월에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UHD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방송사의 요청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에 따라서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적용될 경과조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보편적인 UHD 시청권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군 지역 시청자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 제62차 회의 때 본 위원은 지상파 UHD 도입 과정은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명분으로 지상파 3사가 요구하고 국회가 개입해서 결정했지만 주무부처인 제3기 방통위 역시 좀 더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정책방안 수립 시의 예측과 현재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처에 발상의 대전환을 주문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위원회에서 초청 특강을 했던 대통령경제특보 이정동 교수의 조언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정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공통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제기된 키워드가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역량, 즉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콘셉트 디자인이라고 표현되는 개념설계 역량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속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으로서 실행역량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요구되는 창조적인 역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가 지상파 UHD 도입에 대한 개념설계를 다시 했으면 바람입니다. 2015년 정책 도입 당시에 방송사 기술인들의 목소리가 과다하게 대표되었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방송업계 현실에 맞는 미래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와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콘셉트 디자인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실무의 역량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시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결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UHD 도입은 아날로그를 HD로 전환하는 과정 보다는 수월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5G 서비스 도입과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경쟁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를 통한 논의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 오류를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한 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사무처에 제안드립니다. 둘째는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에 발표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수신 개선을 위해 UHD TV 수신안테나 내장화 검토와 같은 정책방안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UHD 방송을 도입하는 이유는 실감형 방송에 근접한 고화질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UHD 콘텐츠의 제작과 기술개발에 대한 최근 흐름을 반영하고 5G 서비스와 연동하는 IP 기반의 부가서비스 도입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상파 UHD 플랫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개념 설계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UHD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수신이 가능해야 하고, 단순히 화질과 음질의 개선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IP 기반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양방향과 모바일 방송까지 확장하는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야만 시청자 복지향상과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의결주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오늘 이 안건에 적시된 경과조치는 지상파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최소한의 보완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여지책인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UHD 정책이 기본적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700MHz 대역 황금 주파수가 배정된 우리나라의 UHD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과조치를 통해 새롭게 정책을 더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안에 적시된 대로 내년 7월까지 확실하게 UHD 방송 정책 방안이 새롭게 수립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계획 자체가 또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무처에서 UHD 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굉장히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이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은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인데 계속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이 황금 주파수의 전과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UHD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최초 UHD 방송 허가가 난 이후 3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의무편성비율을 낮춰 달라, 인정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단계 실행에 들어가는데 시·군 지역까지 도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연기해 달라, 도대체 지상파들이 UHD 방송을 공짜로 가져가 놓고 그동안 노력해 온 그야말로 성의 있게 이 방송을 임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UHD 정책에 맞게끔 실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따로 확보해 놓고 간다거나 이런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 '광고가 떨어져 나간다', '경영이 악화되었다'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미루어 달라', '비율을 낮춰 달라' 이것만 요구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는 시·군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UHD 화질을 즐길 수 있도록 시청자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경영 악화만의 이유로 지상파에게 이것을 또 다시 연기시켜 주거나 경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경과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지상파에 각성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 UHD 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UHD 활성화 협의체가 언제부터 가동되니까? 본격 가동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준비되는 대로 해서 과기정통부와 가전사, 다른 방송사와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지상파는 어떻게든 발을 빼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활성화 협의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파도 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당초 기대 가지고 UHD 방송을 도입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또 현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방통위와 또 지상파의 목표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초창기에 열심히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음을 예측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상파 UHD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목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의체를 재구성해서 이 문제를 따질 때는 위상도 강화시켜야겠지만 왜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중간에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정작 지상파 UHD방송을 실현해야 할 지상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사실상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송정책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현실적 이런저런 이유를 내서 좌초되면 정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책임이 방송사보다 방통위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별한 문제 분석과 함께 그 700MHz를 다 요구했던 방송사에게 엄중한 정책의지와 또 책임도 묻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해 나가고, 또한 도와주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허 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협의체 격상으로 수정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까지 경과조치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들었습니다. 허 욱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수정의견 주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실무적인 말씀드리면 협의체도 우리만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와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시 그쪽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협의체로 해 주시고, 협의체는 어차피 실무자 단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 위 단위의 특위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7월까지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수립을 위해 UHD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할 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가 정책 변경을 어느 만큼이나 받아들일 것인가, 기존 정책에 대한 과감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수립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UHD 활성화 협의체에서 과연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의문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과기정통부와 협의체를 통해 이 기구나 관련된 새로운 검토안을 제안한다면 오늘 의결안건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방송사와 다 협의하고 그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설계들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바로 특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특위는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회의체로 운영된다면 회의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협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오늘 의결하는 문안 밑에 부가사항을 하나 적어서 '앞으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격상 부분을 포함해서 추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격상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

것을 한 줄 기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의결할 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 한 줄만 추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정리해 봅시다. 의결주문은 UHD 방송 정책 방안 마련까지의 경과조치를 담은 안인데 그것과 UHD 방송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과조치와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부분은 별도 안건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다음에 협의해서 별도 안건으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안 의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 안건으로 정리해서 그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일단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다시 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 것들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별도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 방안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체를 격상시켜서 확실한 정책을 내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안건에 동의합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예, 그런 방향이라면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상혁 위원장

- 주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존중해서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별도 안건을 성안해서 추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OTT, SNS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디어 제작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청자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권익 침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청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를 설립·운영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100대 과제 중 70번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의 주요내용으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선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로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시청자 주권보호 및 미디어복지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거쳐 추진안을 마련해서 추진안에 대해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방안에 대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올해 6월 25일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방송사 등 대상으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의견수렴하였습니다. 정리된 추진 방향입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는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청자의 권리 보장과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 기반조성과 역량강화와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립 방안입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 개정을 통해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신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미디어 교육과 홍보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법정 조직 신설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목적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법 개정 시 국회 일정 지연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청자 권익 분야의 전문성과 전국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설립 취지, 국정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설기관으로 신설한 후 궁극적으로는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 후 향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담기구의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는 권익보호 정책 지원, 시청자 역량강화 지원, 시청자 피해구제 지원의 3가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부문별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권익보호 정책 지원 내용입니다.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제도 연구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시청자 권익 침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매체별·계층별로 피해 예방 교육과 시청자 권익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 개발 등 시청자·사업자 교육 및 소통 확대로 역량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자 피해 구제 지원 내용입니다. 방송사업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부처 등 정부 기관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방송 관련 불만 상담을 일원화하여 방송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사업자의 자율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시청자 편의 증대 및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안)은 국정과제이자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한두 개의 조문 정도가 아니라 별도의 장인 6장을 할애할 만큼 시청자 권익보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보고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용자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이자 1인 미디어 제작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기술 발달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침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디지털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권익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역량과 시청자 권익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시청자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무처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매우 노력했지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아쉽습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전담기구 설립을 일단 추진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에 설립되면 정확하게 이 기구 이름은 뭐가 되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명칭은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안으로는….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됩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원'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잠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사실은 별도 독립법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지금 당장 확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동안 '센터'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붙임 2> 16페이지를 보시면 정관 전담기구 신설 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표시했는데 제30조(시청자권익보호조직의 설치)라고 해서 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일단 '시청자권익보호조직'이라고 하고, 적절한 명칭은 고민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별도 기구가 되지 못하고, 우선 이것도 경과조치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이나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에서 빼서 처리하려고 합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국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올해는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재단 내에 있는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운영하려면 1년 연간 예산이 8억원 정도 들고 인력은 13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뒤에 <붙임 2>에 붙어 있는 것이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소요예산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할 경우 1년 예산인데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조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에는 기초 업무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데 여유자금이 별로 없을 것 입니다. 거기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권리 보장, 그리고 이익 보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위원님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재단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재단에서 시청자 권익보호와 여러 가지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검토해서 이쪽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특별히 보텔 이야기는 없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따로 설립을 하느냐 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듣지를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13명에 8억원 정도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정관만 고쳐서 완성된 형태가 아닌 일단 출범부터 해야겠다는 생각 아십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 육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이라도 받아쓸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국회를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설득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 셈입니다.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줄속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추정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예산 당국에 좀 더 설명을 잘해서 최대한 필요성을, 예산당국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것이 업무가 바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어떤 차별이 있는지 100%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 부분들 차별성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안에 시청자 권익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들이 지금도 있는 것 아십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분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어떻게 됐든 부족하지만 내부 예산으로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렇게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는데 상당히 감사한 입장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도 참 많았고, 특히 여야 의원들이 “이미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해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와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자 피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꾸준히 좀 더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이 자칫 지금은 검증 없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검색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권익구제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에 우리 위원님들도 앞장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논의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6일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도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3분 폐회 】